

#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 운영에 관한 내규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8.10.22		16		
2	2019.1.7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지도교수 및 공동 지도교수 운영에 관한 내규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18조,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9조 및 항공·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7>

## 제2장 지도교수

**제2조(지도교수 선정)** ① 일반대학원의 모든 과정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하며, 항공·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2개 학기 이수 후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

② 학생 본인이 속한 학과 교수 중에 희망하는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타학과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할 때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1.7>

③ 교수별 지도학생은 본 대학교 전 대학원을 통산하여 30명 이하로 하며, 한 학기당 박사학위 논문지도학생수는 3명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. 다만,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지도교수는 정년이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, 박사학위과정 3년 이상, 석·박사통합과정 5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한다.

**제3조(지도교수 자격)** ①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석사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 전임교원 중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, 다만, 학과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교원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 <개정 2018.10.22.,2019.1.7>

②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되,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의 비전임교원(명예교수, 석좌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수, 시간강사 등)과 비정년트랙교원(산학협력중점교수, 교육중점교수),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<개정 2019.1.7>

**제4조(지도교수 의무)**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계획수립, 수강지도, 제반 연구발표 및 학위 논문 작성을 지도하며, 해 학기말에 연구지도 학점을 부여한 연구지도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논문대필, 표절 등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도교수 변경)** ①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해외파견,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기 초 30일 기간 외에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7>

②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전공이 변경된 경우,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. 단,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9.1.7>

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현 지도교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 한 후,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
### 제3장 공동지도교수

**제6조(공동지도교수제의 정의)** 공동지도교수제란 대학원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 등을 2인 이상의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함을 말한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공동 지도교수는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, 1인의 책임 지도교수를 둔다.

② 공동 지도교수는 전공분야별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에는 타교의 교원이나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자격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포함하되, 책임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③ 공동 지도교수는 전공분야별 교수 상호간의 협의로 구성하고, 그 구성결과를 학과주

임교수의 제청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1.7>

**제8조(공동지도교수의 기능)** 공동지도교수는 제4조의 의무를 다한다. 다만, 각종 학사관련 행정 업무는 책임지도교수가 수행한다.

**제9조(신청 및 허가)** ①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지도교수, 공동지도교수,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지도교수제도 신청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 매학기 시작 전 신청한다.

③ 각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신청서에 기재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7>

**제10조(논문심사)** ①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.

② 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에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다.

**제11조(준용규정)**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개정 내규 제5조 2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